

문의 · 상담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온라인 신청

고용 ·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total.k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검색창에 **일자리 안정자금 ▼** 을 쳐보세요.

문의 · 상담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사장님, 인건비 걱정은  
일자리 안정자금에 맡기세요.

#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 '18년 1월, 최저임금 해결사를 만나보세요!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은 덜어주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해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이 시행됩니다.

## 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



사회보험료  
지원까지  
꼭 챙기세요!



### CONTENTS 목차

사업소개	03
지원요건	04
지급금액 및 절차	06
신청 절차	07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서식	10
사후관리	13
사회보험료 지원	14
사장님 다시 한번 체크!	15

# 최저임금 해결사

## 사업소개

### ▶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 '18년 최저임금 인상(시급 7,530원)에 따라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 효과가 본격화되기 전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 소상공인·영세기업 대상 한시적 지원 필요
  - '17년 최저임금(6,470원)에 비해 16.4%(1,060원) 인상
  - \* 최근 5년 최저임금 인상률 : 7.4%



### ▶ 사업 프로세스



문의·상담 :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지원요건

### ▶ 지원대상 사업주(사업주 요건)

#### ✔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 다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해고 위험이 높은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에 대해서는 30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

공동주택(아파트) 경비, 청소원 (30인 요건 미 적용,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

#### ✔ 지원 제외 사업주

- 고소득 사업주(과세 소득 5억 초과)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국가 또는 공공기관, 최저임금 미 준수 사업주
-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업주(어린이집 등)
- 30인 미만 요건 충족을 위하여 인위적으로 감원을 한 사업주



### ▶ 지원대상 근로자(근로자 요건)

#### ✔ 월평균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

- (상용근로자) 근로자 30인 미만 기업에서,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이며, 최저임금 준수 및 전년도 임금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 (일용근로자) 근로자 30인 미만 기업에서, 1개월 중 15일 이상 근무, 일당 87,000원 미만이며,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 ✔ 지원 제외 근로자

- 사업주의 배우자                                    • 사업주의 직계 존·비속
- 고용기간 1개월 미만인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 근로자도 지원

예) 합법 외국인 근로자, 개인 운영 5인 미만 농·림·어업 근로자 등



문의·상담 :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 지원요건 용어 설명

### ✔ 30명 미만

- 지원희망월 이전 3개월간의 매월말일 근로자수 평균(3개월 미만이면 해당 개월수)

### ✔ 공동주택범위

-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 고소득 범위

- 개인사업은 사업자등록 단위(사업소득),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당기순이익)

### ✔ 인건비 재정지원

- 운영예산 전부 또는 대부분을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받아 운영(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등)
- 고용보험법에 따른 청년추가고용장려금,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해당 근로자만 지원 배제

### ✔ 고용조정 기업

-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등)처리

### ✔ 최저임금 위반

- 정액급여(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18년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에 미달

### ✔ 임금체불 공개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체불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 고용보험 적용(적용제외 근로자)

- 근로자 1인 이상 사용 사업주는 고용보험 당연적용(단, 4명 이하 개인 농업/임업/어업, 가구내 고용활동 제외)
-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1주 15시간 미만 포함) 단시간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별정우체국직원

### ✔ 월평균 보수

- '18년도에 지급 예상되는 보수총액[근로소득(기본급+연장수당+상여금+성과급 등)-비과세소득]을 해당 기간 개월수로 나눈 금액

### ✔ 임금수준 저하

- '17년도 월평균 보수액에 비해 '18년도 월평균 보수액이 저하된 경우

문의 · 상담 :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지급금액 및 절차

### ▶ 지원금액 산정

주 40시간 이상, 월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근로자 1인당 월 13만 원 정액 지급</li> <li>※ 최저임금 인상분 12만 원 + 노무비용 지원 등 1만 원</li> </ul>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0 ~ 40시간 : 12만 원</li> <li>• 20 ~ 29시간 : 9만 원</li> <li>• 10 ~ 19시간 : 6만 원</li> <li>• 10시간 미만 : 3만 원</li> </ul>	
일용근로자 - 월 근로일수 기준 (8시간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2일 이상 : 13만 원</li> <li>• 19 ~ 21일 : 12만 원</li> <li>• 15 ~ 18일 : 10만 원</li> <li>※ 일평균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해당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li> </ul>	

### ▶ 지급결정 및 지원금 지급

#### ✔ 직접 '현금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 (현금 지급) 사업주 통장으로 입금 ※ 매월 10일, 20일, 30일 등 입금일자 선택 가능
- (대납) 지원금 산정 후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별 4대보험 월별고지금액에 따라 안분

#### ✔ 공동주택 경비원, 미화원 등의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로 지원금 지급

신청은 용역업체! 지원금은 입주자 대표회의!



#### 계속지급

- 사업장 계속 가동, 계속 근무, 고용유지 노력 등 심사
-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외국인, 초단시간, 일용근로자 등)
- ▶ 매월 고용유지 확인 후 지급


※ 최초 지원금 지급 후에는 지급방식 변경은 불가하며, 소급 신청(신청월 전전월 이전 지원금 신청) 사업주,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주, 공동주택, 자진신고 사업장(건설업, 별목업)은 직접 지급방식만 선택 가능

문의 · 상담 :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신청 절차

## ▶ 지원신청 절차 및 방법

- 신청자 : 30인 미만 근로자 고용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
    - 사무대행 인정  기존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 **무료 대행**
  - 신청 시기 : 연1회(소급신청 가능)
  - 신청 내용 : 신청서, 구비서류 등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원칙(5인 미만 사업장만은 오프라인 신청 허용)
  - 신청 접수 기관 : 사회보험 3공단, 고용센터, 주민센터(총 3,940개소)
- ▶ 온라인 신청
- 사회보험 3공단 및 고용센터 EDI 및 4대보험 연계센터전용 웹사이트

### | 온라인 신청사이트

명칭	사이트 주소	운영기관	홈페이지 문의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a href="http://www.jobfunds.or.kr">http://www.jobfunds.or.kr</a>	고용노동부	02-2004-7349
근로복지공단EDI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a href="http://total.kcomwel.or.kr">http://total.kcomwel.or.kr</a>	근로복지공단	1833-6000
국민건강보험EDI	<a href="http://edi.nhis.or.kr">http://edi.nhis.or.kr</a>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국민연금EDI	<a href="http://edi.nps.or.kr">http://edi.nps.or.kr</a>	국민연금공단	063-713-6565
고용보험EDI	<a href="https://www.ei.go.kr">https://www.ei.go.kr</a>	한국고용정보원	1577-7114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a href="http://www.4insure.or.kr">http://www.4insure.or.kr</a>	국민연금공단	063-711-7800

- ▶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미만이거나,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의 경우 오프라인 신청 허용
- 오프라인 신청은 사업장 관할 사회보험 3공단(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고용센터, 주민센터로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신청

문의 · 상담 :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 신청서식 및 유의사항

고용보험 적용 및 가입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어, 기존 고용보험 신청서식을 활용하여 신청함에 유의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	고용보험 적용제외의 사업장
신청서식	<p><b>기존 고용보험 신고서 활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년 신규 사업장 및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및 근로자</li> <li>▶ 고용보험 성립신고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li> <li>• 기 가입 사업장 및 근로자</li> <li>▶ 지원대상 근로자 월 평균보수변경신고서</li> <li>• 일용근로자</li> <li>▶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서</li> </ul>	<p><b>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별도서식)</b></p>
첨부서류	<p><b>해당 근로자 최초 지원달의 임금지급내역 확인 가능한 서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금대장, 무통장입금증, 급여통장사본 등</li> </ul> <p>ex) '18. 5월에 근로자 2인 지원신청시 근로자 A(1월 입사), 근로자 B(3월 입사) → 근로자 A : 1월 임금대장, 근로자 B : 3월 임금대장</p>	<p><b>근로관계 확인이 가능한 서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근로자 근로계약서</li> <li>• 임금지급 내역 확인 서류 등</li> </ul> <p><b>업종 확인이 가능한 서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자등록증, 농업경영체증명서,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어업허가증 등</li> </ul>

## ☑ 추가신고(3공단, 고용센터, 주민센터로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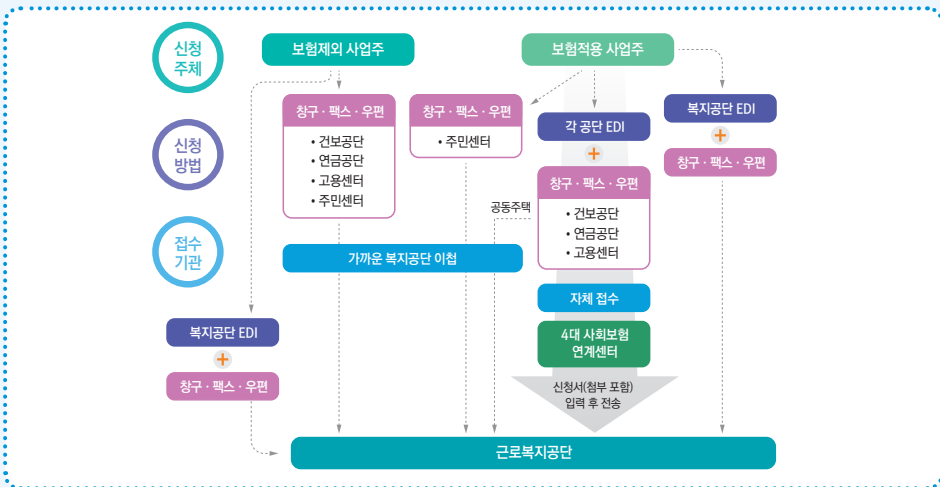
<p><b>추가 신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 입사 등으로 지원대상 근로자가 추가 되는 경우</li> <li>▶ '고용보험 신고서'로 신고(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li> </ul>
<p><b>변경 신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장 및 지원 근로자 변경 사항</li> <li>▶ '일자리 안정자금 변경사항 신고서'로 신고 + 고용보험 변경사항 신고서 제출 병행</li> <li>• 지원대상 근로자 퇴사 시</li> <li>▶ '일자리 안정자금 변경사항 신고서'로 신고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li> </ul>

문의 · 상담 :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 신청 시 유의사항

- ▶ 해당 근로자가 고용보험 미가입자와 기 가입자가 혼재 되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대상자별’로 각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 연 1회 신청 이후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매월 자동 지급
  - 근로자 퇴사, 사업장 주소이전 등 신청내용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 · 근로자의 경우에는 매월 실제 근무여부 등이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고용 유지 확인서류’를 매월 **지급희망일 전 7일까지** 제출(팩스 등)하여야 함
- ▶ ‘공동주택’의 경우, 신청인과 지원금 지급 주체가 달라 ‘근로복지공단’으로 온/오프라인으로 신청
  - ※ 단, 온라인 신청은 4대사회보험 3공단 및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함
- ▶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 일용직의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일자리 안정자금 변경신고서’의 온라인 신청은 근로복지공단(고용 · 산재보험토털서비스)에서만 가능
- ▶ 오프라인 신청(방문 또는 팩스 등)은 3공단, 고용센터,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모두 가능
- ▶ 오프라인 접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근로복지공단 EDI(고용 · 산재보험토털서비스)에서 다운받아 사용

### ➤ 신청 세부 흐름도



문의 · 상담 :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서식

##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

### 고용보험 기적용사업장(근로자) 신청 서식

[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 ] 고용·산재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시고 하거나, 미주은 관공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별첨)

접수번호: \_\_\_\_\_ 접수일: \_\_\_\_\_ 처리기간: \_\_\_\_\_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휴대폰번호
소재지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기준소득월액 변경 연월	변경 기준소득 월액	근로자 등의 (사명 또는 인)	변경 후 보수월액	보수 변경 월	변경사유	변경 후 고용보험 산재보험

별첨의 신청  
자료 신청  
1) 예 1 100-10  
1) 예 1 100-10

### 고용보험 신규 가입 사업장 신청 서식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장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2.31>

국민연금 [ ] 퇴직연금(기관) 적용신고서  
 건강보험 [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 ]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 근로자 고용 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시고 하거나, 미주은 관공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제1쪽 뒷면)

접수번호: \_\_\_\_\_ 접수일: \_\_\_\_\_ 처리기간: 건강보험·국민연금 3일, 고용·산재보험 5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사업장 형태	[ ] 법인 [ ] 개인
	소재지	우편번호( )	전자우편주소	FAX번호
사업장 (대표자)	주관을 수월지	우편번호( )	종목	(주생산업)
	전화번호	(휴대전화)	사업자등록번호	업종코드
사업장 (대표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계좌번호)
	주소	(연락처)	(예금주명)	전화번호
보험료 자율이체신청	은행명	계좌번호	고용보험	
	예금주명	예금주 주민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	산재보험	
보험료 전자고지 신청	고지 방법	[ ] 전자우편 [ ] 휴대전화 [ ] 인터넷 홈페이지(사회보험통합청구포털)	4대 사회보험 합산신고서	[ ] 신청
	수신처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가입한 아이디)	수신자 주민등록번호		[ ] 미신청

■ 국민연금 [ ]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 ]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 근로자 고용 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시고 하거나, 미주은 관공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제1쪽)

접수번호: \_\_\_\_\_ 접수일: \_\_\_\_\_ 처리기간: 3일(고용보험은 5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단위사업장 명칭	영업소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유선)	(이동전화)	FAX번호	우편번호( )
담당자부 연락처	번호	명칭	회사공인 관리번호(건강조사 등 이용인·직수급인만 해당함)	

구분	성명	국적	대표자 여부	세무사 직(제외)	별 소득액 (소득월액, 보수월액, 월급 포함)	직과 취득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합산신고서
							취득 유무	취득 유무	취득 유무	취득 유무	취득 유무	취득 유무	
1							[ ] 국민연금 (1) 취득 및 납부 계획	[ ] 건강보험 (1) 취득 예정	[ ] 고용보험 (1) 취득 예정	[ ] 고용보험 (1) 취득 예정	[ ] 고용보험 (1) 취득 예정	[ ] 고용보험 (1) 취득 예정	[ ] 신청 [ ] 미신청

문의 · 상담 :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지원대상 추가 신청 서식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2호의5)에 의한 2017.5.28. >  
**국민연금 [ ] 사업자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 ]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 근로자 고용 신고서** (제1식)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주소지	연락처	담당사업장 명칭	영업시간	우편번호
전화번호 (유선)	(무선)	(이동전화)	FAX번호			
보험사주 대표이사	번호	직책	명칭	과수금인 관리번호(간접유사 또는 미등록 과수금인명 제정번호)		
본사	성명	국적	대표자 여부	직책	연락처	주소지
1	주요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성별	직업	직종	직업
2						

※ 지원대상 추가사 위 신청서로 신청(체크리스트 제외)

## 공동 필요(첨부) 서식

일자리 안정자금 체크리스트	
□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에서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위 지원금은 아래 해당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요건 충족 시 관련 선 안의 체크표시에 정확히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 요건	예 아니오
1. 지급대상일 직전 3개월간 매출 발생 기준 근로자수가 평균 30인 미만입니다.	√
2. 30인 요건 충족을 위해 인위적 관원이나 사업장을 분할하지 않았습니다.	√
3. 관(전)년도 과세소득 5억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개인: 사업소득금액, 법인: 당기순이익)	√
4. 임금체불 중 또는 임금체불로 영장 공개종이 아닙니다.	√
5. 국가 및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
6.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이 제한되는 사업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사실이 없습니다.	√
7.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 근로자 요건 (반드시 개인별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1. 신청대상 근로자별 월평균근로수가 190만원 미만입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	
□ 공제대상 및 제외대상은 제1식 뒷면 설명에 따라 기재하여 주시기 하며, 제외 사유는 본인 신청서 기재하여야 합니다. (제1식 뒷면 참조)	
본사	성명, 주소지, 대표자, 수감형, 계좌, 고지 방법
지점장 명칭	성명, 주소지, 대표자, 수감형, 계좌, 고지 방법

## 공동주택관리 사업주(경비/미화원 등 용역제공업주 포함)

일자리 안정자금 체크리스트	
□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에서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위 지원금은 아래 해당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요건 충족 시 관련 선 안의 체크표시에 정확히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 요건	예 아니오
1. 지급대상일 직전 3개월간 매출 발생 기준 근로자수가 평균 30인 미만입니다.	√
2. 30인 요건 충족을 위해 인위적 관원이나 사업장을 분할하지 않았습니다.	√
3. 관(전)년도 과세소득 5억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개인: 사업소득금액, 법인: 당기순이익)	√
4. 임금체불 중 또는 임금체불로 영장 공개종이 아닙니다.	√
5. 국가 및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
6.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이 제한되는 사업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사실이 없습니다.	√
7.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 근로자 요건 (반드시 개인별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1. 신청대상 근로자별 월평균근로수가 190만원 미만입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공동주택용)	
본사	성명, 주소지, 대표자, 수감형, 계좌, 고지 방법
지점장 명칭	성명, 주소지, 대표자, 수감형, 계좌, 고지 방법

##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근로자)

■ 고용노동부고시 [별지 제 호 서식] <제정 2017. . >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제1쪽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제1쪽 앞면)  
 ※ 동 서식은 고용 및 산재보험 도입 서비스를 통해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일자리관리번호	처리기간	18일
사업장	고용보험관리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명칭	전화번호	FAX번호	
	주소 (□□□□□)		상시근로자수	
공통	대표자	주인(외국인)등록번호		사업개시일
	지택 (□□□□□)	휴대전화		
지원금 결정 통지 방법	계좌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고지 방법 [ ] E-mail [ ] 우편수령 [ ] 휴대전화(SMS) 등	지급희망월 (YYYY.MM)		
	받는곳 (E-mail, 주소, 휴대전화)		지급희망일 (2회분 이후)	<input type="checkbox"/> 10일 <input type="checkbox"/> 20일 <input type="checkbox"/> 30일

- ※ 지급희망월은 신청이 최초로 지급받고자 하는 해당월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 ※ 최초신청 시 선택한 지원금 지급희망일(2회차 이후)은 이후 변경하지 못합니다.
- ※ 최초신청 이후 근로자 제외·변경사항 발생 시 '일자리 안정자금 근로자 변경 신고서' 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매월말일 근로자수

신청월 전연도

신청월 해당연도

※ 지원대상 추가시 위 신청서로 신청(체크리스트 제외)



일자리 안정자금 체크리스트		예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에서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input type="checkbox"/> 위 지원금은 아래 해당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지급됨을 알려 드리며, 요건 충족 시 붉은 선 안의 체크표시에 정확하게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input type="checkbox"/> 사업장 요건			
1. 지급희망월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기준 근로자수가 평균 30인 미만입니다.	√		
2. 30인 요건 충족을 위해 인위적 감원이나 사업장을 분할하지 않았습니다.	√		
3. 전(전)년도 과세소득 5억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개인: 사업소득금액, 법인: 당기순이익)	√		
4. 임금체불 중 또는 임금체불로 영단 공개행이 아닙니다.	√		
5. 국가 및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		
6.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이 제한되는 사업의 인건비 지원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	
7.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input type="checkbox"/> 근로자 요건(반드시 개인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1. 신청대상 근로자별 월평균보수가 190만원 미만입니다.	√		
2. 신청대상 근로자는 모두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3. 신청대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사업주의 직계존비속이 아닙니다.	√		
4. 고용보험 가입대상인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일용근로자가 있는 경우		신청월 전연도		신청월 해당연도	
■ 고용노동부 고시 [별지 제 호 서식] 제정 2017. . 일자리 안정자금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 년 월분) ※ 이의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여부 통지가 가능합니다.					
일자리관리번호	접수번호	처리기간	18일		
사업장명	사업장등록번호	관리번호			
성명					
주인(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					
근로자수 (주요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월	일	월	일	월	일
연수확인 (가이드)	연	월	일	연	월
기타 비고	□	□	□	□	□

문의 · 상담 :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사후관리

### ▶ 사후관리 및 이의신청

#### ✔ 사후관리

- (매월) e-나라도움 등 정보연계 점검
- (주기적) 정기(반기) 및 수시 점검
- (온라인) 신고 및 제보 사이트 운영

#### ✔ 부정(당)수급액 환수

- 거짓 신고, 증빙서류 위조 · 허위 청구 등
- 환수 명령(공단), 강제 징수(고용노동부)
- 환수금 5배 제재 부가금, 형사고발

#### ✔ 이의신청

- 지원금 부지급 결정, 부정(부당)수급 환수결정 등
-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 제기 가능



### 다시 한번 알려드려요!

#### ◆ 지원대상 근로자가 추가 되었나요!

- (고용보험 적용 사업주)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공동주택은 공동주택용)  
※ 적용제외 근로자 : 일자리안정자금신청서(일용은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서)
-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업주)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서  
※ 일용은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서

#### ◆ 지원 근로자가 퇴사 또는 지원요건(월 190만원)을 초과하였나요!

(다음월 지급희망일 이전 7일까지 제출(팩스 등)하여야 함)

- 일자리안정자금근로자변경신고서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는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병행 필요

문의 · 상담 :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사회보험료 지원

### ▶ 사회보험료 지원까지 꼭 챙기세요!

-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 수준향상
  - 지원대상 기본보수 : (현행) 월 보수 140만원 미만 ▶ (개선) 190만원 미만
  - 5인 미만 사업장 신규가입자 지원수준 : (현행) 60% ▶ (개선) 신규 90%(5~10인 미만 80%)
- ✔ 건강보험료 50% 경감(18년 한시)
  - 해당 사업장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신규가입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는 경우
- ✔ 4대 보험 신규가입시 2년간 세액공제
  - 10인 미만 고용기업 보험료 부담액의 50%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월부담액 **13.8만원 → 1.7만원으로 경감**

※ 5인 미만 사업체, 월보수 157만원(최저임금 100%) 노동자 1인 기준, 산재보험 제외

### 4대 보험 가입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 ◆ 고용보험

- 사업주 : 고용창출 · 안정에 필요한 인건비 등 지원
- 노동자 : 실업급여 · 직업훈련 등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

#### ◆ 산재보험

- 산재발생에 따른 사업주의 재정적 · 형사적 부담 해소
- 산재요양부터 완치까지 의료비, 휴업급여 등 지원

#### ◆ 건강보험

- 직장가입시 1년 또는 2년에 1회 국가건강검진 실시
- 퇴직 시 임의계속 가입 적용 가능

#### ◆ 국민연금

- 평생 동안 매달 월급처럼 꼬박꼬박 지급
- 매년 물가상승만큼 연금액 인상으로 실질가치 보장

문의 · 상담 :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사장님 다시 한번 체크!

## ▶ 일자리 안정자금 체크리스트

-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에서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위 지원금은 아래 해당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지급됨을 알려 드리며, 요건 충족 시 붉은 선 안의 체크표시에 진하게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 사업장 요건	예	아니오
1. 지급희망월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기준 근로자수가 평균 30인 미만입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30인 요건 충족을 위해 인위적 감원이나 사업장을 분할하지 않았습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전(전)년도 과세소득 5억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개인: 사업소득금액, 법인: 당기순이익)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임금체불 중 또는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중이 아닙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국가 및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6.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이 제한되는 사업의 인건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7.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근로자 요건(반드시 개인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1. 신청대상 근로자별 월평균 보수가 190만원 미만입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신청대상 근로자는 모두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신청대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사업주의 직계존비속이 아닙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고용보험 가입대상인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기존 근로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 유의사항

- ① 근로자의 퇴사, 소정근로시간 및 보수인상 등 지원요건이나 사업장 소재지 등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②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이후 고용감소 시 고용유지 노력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일자리안정 자금 신청을 하여 지원금을 수령할 시 지원금 환수와 더불어 그 금액의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본부장)지사장 귀하**

문의 · 상담 : ☎ 근로복지공단 1588-0075